

강릉원주대학교 수업평가 규정

[시행 2022.2.24] [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058호, 2022.2.24, 일부개정]



강릉원주대학교 033-640-205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0조에 따라 수업평가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평가결과를 교원에게 제공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27., 2022.2.24.>

제2조(평가대상) ① 수업평가는 해당 학기 개설된 모든 강좌를 대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8.27.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업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7.>

1. 교수가 직접 수업하지 않는 강좌 <개정 2018.12.31., 2020.8.27.>
2. 외부초청수업을 6주 이상 실시하는 강좌 <개정 2018.12.31., 2020.8.27.>
3. 학군단 군사교육 강좌
4. 이러닝, OCU 등 사이버 강좌 <개정 2020.8.27.>
5.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강좌

제3조(평가자) 평가자는 해당 학기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재학생으로 하되, 해당 학기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평가는 해당과목의 결과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8.27.>

제4조(평가의 구분) 수업평가는 중간수업평가와 기말수업평가로 구분하여 매 학기 2회 실시하되, 중간수업평가의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및 각종지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8.27.>

[제목개정 2020.8.27.]

제5조(평가방법 등) ① 수업평가는 5점 척도로 평가한다. <개정 2020.8.27.>

② 수업평가는 수강학생이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한 전체 교과목에 대해 평가한다. <개정 2020.8.27.>

③ 수업평가 중 평가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않는다. <개정 2020.8.27.>

④ 각 교과목 수강학생은 기말수업평가를 실시하여야만 개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7.>

⑤ 5인 이상의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목은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학생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하고 수업평가 점수를 산출한다. <신설 2018.12.31., 개정 2020.8.27.>

제6조(강의평가 문항) ① 수업평가 문항은 그 성격별로 공통문항, 선택문항, 부정문항, 서술문항으로 구분하며, 세부 문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0.8.27.>

② 선택문항은 수업평가 이전에 교원이 교과목별로 직접 지정하며, 교양교과목과 그 밖의 교과목(전공, 교직, 일반선택)을 구분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20.8.27.>

③ 부정문항의 점수는 평가결과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) ① 수업평가의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며, 각 교원은 개별 열람하여 수업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27.>

② 매학기 수강신청 중 학생은 개설 교과목의 직전학기 수업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으며, 학생은 그 결과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 <개정 2020.8.27.>

③ 치과대학 개설 교과목을 제외한 분담강의 교과목은 수업평가를 실시하여도 그 결과점수를 교원업적평가 및 각종지표 등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0.8.27.>

- ④ 수업평가 결과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이행사항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준별 세부 이행사항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0.8.27.>
- ⑤ 제4항의 이행사항을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수업평가 반영 항목의 배점 중 최하점수로 부여한다. <개정 2020.8.27.>

제8조(비밀유지) 수업평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<개정 2020.8.27.>

[조개정 2022.2.24.]

제9조(준용) 수업평가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<개정 2020.8.27.>

부칙 <제2058호,2022.2.24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20.8.27.>

수업평가 결과 하위기준에 따른 이행사항

대상자	하위기준	이행사항
전임교원	1. 2년 연속 수업평가 결과 4.0미만이며, 소속 단과대학 하위 10%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교원(분담강의 제외)	1. 해당교과목에 대한 CQI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)보고서 작성제출
	2. 3년 연속 수업평가 결과 4.0미만이며, 소속 단과대학 하위 10%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교원(분담강의 제외)	2. 해당교과목에 대한 CQI보고서 작성제출, 매년 수립되는 '교육·연구·학생지도비용지급계획' 중 교육영역 공통지표(수업개선) 70% 지급등급 적용 ※ 단, 직전결과보다 0.5이상 점수가 향상되고, 그 점수가 3.5 이상인 경우 대상제외